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5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조미선 의원 발의)

#### 1. 제안이유

-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, 시장이 회의를 소집·개최하는 경우 실비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.

#### 2. 주요골자

- 회의 참석수당 관련 조문 신설(안 제3조의2)

##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4년 11월 20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18132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32
  - 전자메일 : aragu@korea.kr

##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회원단체”를 “회원단체(동 위원회를 포함한다.)”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회의수당)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(단, 회의 소집 대상은 시 회장 및 동 위원장으로 한정)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자연보호운동 조직”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 경기도 오산시협의회와 그 산하 <u>회원단체</u>를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회원단체(동 위원회를 포함한다.)</u>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조의2(회의수당)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(단, 회의 소집 대상은 시 회장 및 동 위원장으로 한정)</u></p>